

2018년 제·개정시행 노동법률 및 노동정책

GSFIC 2018.04.30

① 근로시간 단축, 휴일노동시간의 가산수당

(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7일로 규정,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명확화)

*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(52시간)

구분	시행시기	비고
300인 이상, 공공기관	2018년 7월 1일 시행	단, 특례업종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로 한다.
50~299인	2020년 1월 1일 시행	
5~49인	2021년 7월 1일 시행	

- 30인 미만 사업장 :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
- 52시간은 규모별 시행, 가산수당은 공포 수 시행(미공포)

② 유연근무제

(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,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, 제58조 간주,재량 근로제)

- 임의 규정이므로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로 없음. 단, 법적 요건 미충족시 가산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함.

③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*2018년 9월 1일 시행

(26개의 특례업종 중 21개를 제외한 5개로 축소,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(11시간) 보장)

④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*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

(민간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공휴일이 유급 공휴일로 적용)

구분	시행시기	비고
300인 이상, 공공기관	2020년 1월 1일 시행	부대의견 :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 시 국회와 합의하여 지원방안 마련
50~299인	2021년 1월 1일 시행	
5~49인	2022년 7월 1일 시행	

⑤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*2018년 7월 1일 시행

(연소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단축)

⑥ 벌금액 상향조정 *2018년 5월 29일 시행

(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)

⑦ **남녀고용 평등법** *2018년 5월 29일 시행

(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/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/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신설)

⑧ **산업재해 보상보험법** *2018년 1월 1일 시행

(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)

⑨ **최저임금 인상** *2018년 3월 20일 시행

(6,470원→7,530원)

⑩ **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** *2018년 5월 29일 시행

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도입 및 우수사업주의 경우 공공 계약 시 우대)

⑪ **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로 연차유급휴가 보장** *2018년 5월 29일 시행

(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보장(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)

⑫ **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보장** *2018년 5월 29일 시행 (18.5.30 입사자부터 적용)

(입사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입사 첫 해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)